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42
----------	------

발의년월일 : 2024. 04. 12.

발 의 의 원 : 김태우, 김정옥,
박소영, 박종필,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순,
황순자 의원(9명)

1. 제안(개정) 이유

- 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 나. 「국민건강증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유치원, 학교, 주유소 등)을 정비하며,
- 다.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대구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제명 변경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6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상 금연구역 지정 해제(안 제4조)
- 다.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을 “해당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연구역 홍보 및 예산지원)”을 “(금연환경의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협약) 시장은 관할 자치구·군의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만원 이하”를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른 <u>교육환경보</u></p>	<p><u>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금연환경</u>”이란 <u>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 환경을 의미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u>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8. (생략)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
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금연구역 홍보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
해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금연지도원) ①·② (생략)

③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령에 따른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흡연실의 설치) ① -----

----- 해당구
역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환경의 조성 등) ① 시장

은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
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금연지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④ -----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3. (생략)

제9조(업무협약) 구청장·군수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영-----
2. 3.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협약) 시장은 관할 자치구·군의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

----- 5만원 -----
-----.

② -----
----- 영-----

-----.

<삭제>

관 계 법 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 2024. 8. 17.] 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제19조의2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2024. 7. 31.] 제39조